

수신자 도시활성화과장

(경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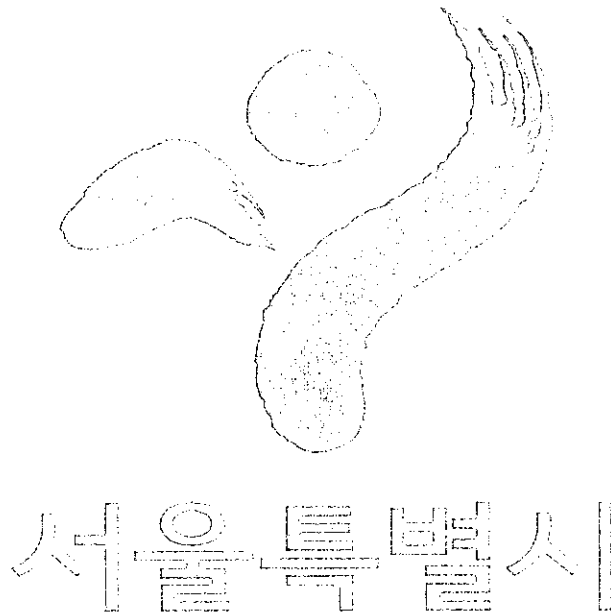
제 목 행당 도시개발사업(1단계) 준공검사 관련 관계기관 협의 요청 회신

1. 도시활성화과-10532(2019.9.9.)호와 관련입니다.
2. 행당 도시개발사업 준공검사 관련 장애인 편의시설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검토의견 : 본 협의건은 도시개발법 제50조 제2항에 의거한 준공검사로서, 해당 사업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대상시설)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도시개발택지조성공사’ 이기 때문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대상이 아님. 그러나, 향후 해당 필지에서 건축행위가 발생했을 시에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에 의거하여 시설 계획 후 장애인 편의 시설 적정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3. 또한, 장애인 편의시설 건축협의 및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세부기준 등에 대해 서울시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T:790-5413)를 통해 사전 상담(협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아울러, 서울시만의 독자적인 「서울형 장애물 없는 건물 인증」 및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에서 공동으로 추진하는 “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 인증제(BF:Barrier-Free)”를 안내하오니, 귀 부서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적극 도입하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약자가 건축물 등에 접근·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안내 〉〉

구분	서울형 인증제	정부 인증제
인증대상	민간 건축물(신축, 기존건물)	국가, 지자체가 신축하는 건축물(의무) 등
인증등급	'서울형 장애물 없는 건물' 인증	최우수, 우수, 일반 인증
인증절차	예비인증(신축 설계), 본인증	예비인증, 본인증(2단계)
인증기관	서울시(자체 인증심의위원회)	보건복지부(한국장애인개발원) 국토해양부(LH공사)
인증수수료	무료	유료(예비 206만원, 본인증 403만원) ※ 건축 면적에 따라 금액 차등 요율 적용
문의	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과 (02)2133-7462	- 한국장애인개발원 (02) 3433-0600 - 한국토지주택공사 (031) 738-4548

붙임: 준공검사 관련 편의시설 검토 회신 1부. 끝.



장애인자립지원 **신청** 정

★주무관 **이선호** 장애인편의시설팀 **곽정순** 장애인자립지원과 09/24 **신수정**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3548 (2019.9.24.) 접수 도시활성화과-11140 (2019.9.25.)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1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462 /전송 02-2133-0839 / sunho8368@seoul.go.kr / 부분공개(5)